

2022년 4월 16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①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2. 4. 18.(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2. 4. 18.(월) 10:00 ~ 2022. 4. 20.(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2. 5. 6.(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료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기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도 청구할 수 없다.

【문 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4】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추정력으로 등기가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④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5】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 ④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 6】 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것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였더라도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②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③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7】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신원 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특정 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상소의 제기과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0】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②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③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문1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보조참가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문12】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③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사실만을 증명하면 20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④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1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4】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 ④ 가등기담보법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5】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토지교환계약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

【문16】 변제로 인한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가지는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다.
- ②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로 인한 대위도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
-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문17】 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양자가 될 자는 그가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친양자 입양의 성립이 확정된 때로부터 친양자의 종전 친족관계는 장애를 향하여 종료하므로 친양자에게 이미 발생하였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문18】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 ④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9】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입하는 경우 종전 수임인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었다면 종전 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 ②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20】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③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문21】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②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청구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고,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되 심리도중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과납 인지 대금 환급 또는 인지보정조치를 취한다.
-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문22】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시기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②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유효한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을 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23】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송부문서가 도착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 없이 증거자료가 된다.
- ③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지만,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자를 제재하는 수단은 없다.
- ④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문24】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먼저 본소로 그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후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다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

【문25】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고, 상소에 의해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까지 경정할 수는 없다.
- ②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 원금이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으로 누락된 원금 부분을 추가할 수 없다.
- ③ 경정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나, 판결상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원래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④ 판결경정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또는 경정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 모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26】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도 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 ②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은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④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고,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통상항고이다.

【문27】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친다.
- ②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더라도 그 서면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문28】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또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② 소액사건을 제기한 후 다른 소액사건을 병합함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소액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성질상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민사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A가 B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C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C가 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C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B로서는 더 이상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9】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결정될 뿐, 실제로 이행청구권자 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가 압류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3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에 대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31】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변론준비절차나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③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보조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 자백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32】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고, 만일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못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급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이송받은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문33】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은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하거나,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34】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②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③ 수소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 민사소송에서 인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에 회부된 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조정기일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문35】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 ②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통지 및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법한 기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을 받은 이상은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④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36】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재판 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조결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나, 소제기 이전에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척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④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문37】 보증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는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물론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한 후에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④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으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 그 뒤에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문38】 소의 취하 및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심리를 속행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③ 화해조서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 ④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나,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문39】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생긴다.
- ②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러한 참가는 공동소송참가가 된다.
- ③ 공동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문40】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② 임대차종료의 원인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③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이나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약정사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1】 배임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협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지입차주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문 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확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허위의 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3】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위 죄의 규율 대상으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②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문 4】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거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하였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②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않고,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라도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5】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 ②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 6】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동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문 7】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속으로 인하여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문 9】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0】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는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문11】 약식절차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④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경우에도 법원은 우선 약식명령을 발하여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문12】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 ㄷ. 포괄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어 그러한 일죄의 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검사가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구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취지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 ㄹ.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는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3】 법원사무관의 제척·기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사무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법원사무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③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당한 법원사무관의 소속 법관(합의부에 참여하는 때에는 합의부,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의 사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판사)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문14】 자유로운 증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는 반드시 증거조사 방법을 거쳐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으면서 특정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문15】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조회는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신서는 기록에 철해졌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된다.
- ④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조회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발송하고 사본 한 장을 기록에 철해두면 되며, 별도로 조회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도 재심청구권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 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 ④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된 경우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고가 가능하다.
- ④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문18】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속기록 등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다음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19】 영상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과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 ④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④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도 매각절차에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룰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2】 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2022. 3. 4.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채권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甲	가압류권자	2019. 1. 11. 가압류등기	2,000만 원
乙	근저당권자	2020. 3. 15. 설정등기	2,000만 원
丙	가압류권자	2021. 9. 21. 가압류등기	4,000만 원

※ 이외에 다른 채권자는 없음

- ① 甲 2,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0원
- ② 甲 1,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2,000만 원
- ③ 甲 1,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1,000만 원
- ④ 甲 2,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1,000만 원

【문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② 배당요구는 서면신청이 아닌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된다.
- ③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경매시 매각대금납부 전에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의 각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 ③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매수인고 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해야 하므로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추후로 변경하고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속행한다.

【문 5】 부동산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토지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구분점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항고심 진행 중에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경매 포함)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1필지 전체에 대한 목적물의 공유지분을 평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제3의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대상 부동산의 중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 대상이 된다.

【문 6】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이는 당사자의 승계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이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문 7】 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법 제2조 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권자가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 8】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내세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의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의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9】 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②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 ③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乙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甲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10】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이의·취소·보전항고재판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즉시 집행력을 가지나 집행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된다.
- ③ 채권자의 보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문11】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물론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②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지급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진 행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③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므로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문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13】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이의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되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준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 ②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건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 ③ 종료된 본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채권양도, 합병, 상속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제1심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문1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이 확정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제소명령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의 경우에는 효력유예 선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효력유예 선언을 할 수 없다.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 ④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문1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 ②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도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문17】 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송달 영수인은 제소명령·이의신청서 부분,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서 부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가압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③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 ④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문18】 공탁자(제3채무자) B는 채무자 A에게 지급할 대여금채무 1,5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甲, 乙, 丙의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등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배당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계산서를 최고한 결과 甲과 乙은 일반채권자이고, 丙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A의 채권자	이유	제3채무자 송달일	청구금액
甲	압류 및 주심명령	2020. 2. 3.	1,000만 원
乙	압류 및 전부명령	2020. 2. 7.	1,000만 원
丙	가압류(임금)	2020. 2. 9.	500만 원

- ① 0원
- ② 250만 원
- ③ 500만 원
- ④ 1,000만 원

【문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2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이 없다.
-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문 1】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한, 이하 [문 20]까지 같음)

- 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을 가지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위해서도 할 수 없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권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 ④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2】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축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②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3】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제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철탄존속기간”과 같이 불확정기간인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③ 구분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미 전세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사용의 제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 4】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 ②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할 수 있지만, 경정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아닌 부기등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로 행세하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甲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 5】 등기절차에서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제3취득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리자가 될 수 없다.
- ②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등기절차상 등기관리자는 아니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관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이다.
- ④ 甲→乙→丙의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먼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丙이지만 등기관리자는 乙이 된다.

【문 6】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이어서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丙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회복에 대한 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丙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
- ④ 丁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문 7】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8】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한다.
- ②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 ④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9】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도 위임장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무인과 교도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관이 등기의무자를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근거 법률에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직무대행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 다른 이사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공한다.

【문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에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 ②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회사가 乙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甲회사로부터 丙회사 앞으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丙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丙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丁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丁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戊회사를 설립한 경우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丁회사를 거쳐 다시 戊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戊회사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후 위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공탁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한 공탁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권자 甲)이 성립한 후 乙이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乙은 전부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공탁액 1억 원)을 하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교부청구할 때까지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 외에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13】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채무액 일부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14】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5】 변제공탁물의 출급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문16】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1천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 1천만 원)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丁)를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1천만 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甲은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탁관은 乙과 丙에게 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채권양도(양수인 丁)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불수리해야 한다.
- ③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수인 丁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7】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18】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②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 ④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19】 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과 丁의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을 각 송달받고, 위 채무 100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乙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출금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과 丁의 채권압류가 각 실효된 경우 乙은 각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위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권압류 · 주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 원)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 ④ ㄱ, ㄹ

【문20】 甲은 乙(주소지 : 의정부시)에 대한 대여금 채무 5백만 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관할 공탁소 : 의정부지방법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乙의 위임을 받은 丙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乙이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乙 명의이어야 한다.
- ④ 乙은 공탁금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 제출이 면제된다.

2022년 4월 16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1차 시험

문제책형

②

시험과목

민사법(40문), 형사법(20문)
민사집행법(20문), 부동산등기·공탁(20문)

용 시 자 준 수 사 항

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코트넷(<http://gw.scourt.go.kr>)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2. 4. 18.(월) 10: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2. 4. 18.(월) 10:00 ~ 2022. 4. 20.(수) 17:00
방법 :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2. 5. 6.(금) 11:00 이후
[코트넷 / 인사관련정보 / 시험 / 자료실]에 게시

※ 코트넷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의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 원 행 정 처

【문 1】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 ①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 2】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추정력으로 등기가 절차상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기절차의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④ 등기가 일단 원인 무효로 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점은 등기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3】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 ④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문 4】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④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문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도 청구할 수 없다.

【문 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한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의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 ④ 근로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여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 7】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②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라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③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문 8】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때를 말하므로 정지조건부권리의 경우에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보조참가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

【문 9】 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였더라도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 ②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 ③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0】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대리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을 본인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 ④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신원 또는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 특정 재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11】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상소의 제기과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12】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상 분할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분할 제한 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하여도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토지교환계약후 甲 소유의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서 甲이 丙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목적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은 아직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

【문13】 변제로 인한 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가지는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다.
- ②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로 인한 대위도 할 수 없다.
- ③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한다.
- ④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문14】 양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양자가 될 자는 그가 성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친양자 입양의 성립이 확정된 때로부터 친양자의 종전 친족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종료하므로 친양자에게 이미 발생하였던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 ④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문15】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③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사실만을 증명하면 20년 간 계속 점유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④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이 진정한 점유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17】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재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가등기담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 ④ 가등기담보법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8】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③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행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 ④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9】 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개입하는 경우 종전 수임인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었다면 종전 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 ②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는 없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문20】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 ③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문21】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소로써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 ②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한 청구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 ③ 채무부존재확인 소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고,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잠정적인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되 심리도중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이 명확해지면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 과납 인지 대금 환급 또는 인지보정조치를 취한다.
- ④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문22】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시기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 ②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유효한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항변을 하는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23】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기록 전부라도 상관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송부문서가 도착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 없이 증거자료가 된다.
- ③ 법원의 송부촉탁을 받은 소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하지만, 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지자를 제재하는 수단은 없다.
- ④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문24】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친다.
- ② 소송상 화해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에 해당될 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통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원고 중 1인만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하지 아니한 다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 ④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더라도 그 서면 표제가 준비서면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문25】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 또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② 소액사건을 제기한 후 다른 소액사건을 병합함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소액사건이더라도 사안의 성질상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민사단독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④ A가 B를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C에게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C가 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C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B로서는 더 이상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6】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결정될 뿐, 실제로 이행청구권자 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지고, 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27】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먼저 본소로 그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뒤에 피고가 그 후에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단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요건에 흠이 생김으로써 다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다.

【문28】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정결정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고, 상소에 의해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까지 경정할 수는 없다.
- ② 표현상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 원금이 누락되었다면 판결경정으로 누락된 원금 부분을 추가할 수 없다.
- ③ 경정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나, 판결상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원래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한다.
- ④ 판결경정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또는 경정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 모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29】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도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 ②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원심재판장은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④ 담보취소의 결정에 대한 최초의 항고는 즉시항고이고, 그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담보취소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통상항고이다.

【문30】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은 제1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하거나,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고, 다만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장이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
-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항소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31】 민사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②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각하명령을 해야 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 ③ 수소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④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해당 조정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제외한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에 회부된 후 제출된 준비서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반소장 등을 조정기일에서 진술하였더라도, 소송복귀 후 수소법원에서 다시 진술시켜야 한다.

【문32】 판결의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기일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다.
- ②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새로 지정한 판결 선고기일에 관하여 적법한 통지 및 출석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법한 기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을 받은 이상은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③ 판결의 선고는 기일에 공개된 법정에서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때에는 할 수 없다.
- ④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문3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권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불법행위가 실화인 경우에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배상의무자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자료에 의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에 대해서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④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겼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공제한다는 손익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34】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변론준비절차나 다른 소송에서의 자백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고 권리관계에 대한 것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 ③ 구체적 사실 중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보조사실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자백의 효력이 생긴다.
- ④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 자백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으로만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문35】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다.
-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고, 만일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다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못하나, 심급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상급심 법원으로서의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음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이송받은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문36】 소의 취하 및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소가 아니더라도 이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가 소송상 화해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심리를 속행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 ③ 화해조서에 분명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 ④ 소취하서는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이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나,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는 없다.

【문37】 보증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은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 등 소극적 당사자는 적법한 송달을 받은 뒤에도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급이 종결됨과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당사자의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③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송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는 물론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한 후에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④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달장소 불명으로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 그 뒤에 당사자에게 송달할 모든 서류를 발송송달 할 수 있다.

【문38】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이 신청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재판비용 및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조결정을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나, 소제기 이전에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척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④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문3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② 임대차종료의 원인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 ③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이나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약정사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40】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소송참가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생긴다.
- ②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이러한 참가는 공동소송참가가 된다.
- ③ 공동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문 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위 죄의 규율 대상으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 ②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문 2】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하였으면 위증죄에 해당한다.
- ②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지 않고,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라도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하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지입차주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문 4】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허위의 신고를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 5】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문 6】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속으로 인하여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경찰청의 교통단속업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공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 ②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문 8】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④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문 9】 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ㄹ.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0】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는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신고는 국가가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데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문11】 약식절차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정보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약식명령의 정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④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경우에도 법원은 우선 약식명령을 발하여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을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문12】 자유로운 증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회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는 반드시 증거조사 방법을 거쳐 그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의 처벌회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임의제출물 압수형식으로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받으면서 특정 이메일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함께 열람한 다음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메일 내용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이와 같은 동의서와 확인서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소송법적 사실로 이메일 출력물의 임의제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문13】 사실조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실조회는 증인 등 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에 따라 법원에 도착한 서류를 증거서류로 조사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증거서류 등 목록에 추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신서는 기록에 철폐졌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조사함으로써 비로소 증거가 된다.
- ④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조회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발송하고 사본 한 장을 기록에 철폐두면 되며, 별도로 조회를 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문14】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 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 ㄷ. 포괄일죄 혹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어 그러한 일죄의 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검사가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구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의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취지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공소장의 변경을 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 ㄹ.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분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는 공소장변경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이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5】 법원사무관의 제척·기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사무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법원사무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③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당한 법원사무관의 소속 법관(합의부에 참여하는 때에는 합의부, 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의 사무에 참여하는 때에는 그 판사)이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문16】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등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속기록 등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다음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는데, 검사 또는 피고인은 그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17】 영상재판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에 따른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기일을 열 수 있다.
- ③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 ④ 영상공판준비기일에서의 서류 등의 제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영상공판준비기일에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접속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도 재심청구권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 ④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라 함은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조에서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고법원은 같은 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이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이 폐지된 경우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구하는 상고가 가능하다.
- ④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 부분(A)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으로부터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 부분(A)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판사는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에서,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될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체포 또는 구인 사실을 본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과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국의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 받았는지 확인하고,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가 확인 및 고지를 한 때에는 심문조서에 이를 기재한다.
- ④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문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② 배당요구는 서면신청이 아닌 말로 하는 신청도 허용된다.
- ③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그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중기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적법한 배당요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경매시 매각대금납부 전에 집행할 판결을 취소하는 재판,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재판,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재판,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의 각 집행력 있는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는 대금완납에 따른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 ③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종료되기까지 사이에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을 정지해야 하므로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추후로 변경하고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매각허가결정기일을 속행한다.

【문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봄이 옳다.
- ③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④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에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도 매각절차에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룰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 4】 乙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2022. 3. 4. 경매개시결정등기)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甲, 乙, 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채권자	지위	원인일자	채권액
甲	가압류권자	2019. 1. 11. 가압류등기	2,000만 원
乙	근저당권자	2020. 3. 15. 설정등기	2,000만 원
丙	가압류권자	2021. 9. 21. 가압류등기	4,000만 원

※ 이외에 다른 채권자는 없음

- ① 甲 2,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0원
- ② 甲 1,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2,000만 원
- ③ 甲 1,000만 원, 乙 2,000만 원, 丙 1,000만 원
- ④ 甲 2,000만 원, 乙 1,000만 원, 丙 1,000만 원

【문 5】 부동산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상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기재할 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법 제2조 제5호의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권자가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됨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 6】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이 행하여질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내세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7】 부동산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지사용권으로서의 토지공유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구분점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항고심 진행 중에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구분점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경우 그 공유자가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을 처분(경매 포함)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때에는 경매대상은 특정 구분소유의 목적물이므로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은 1필지 전체에 대한 목적물의 공유지분을 평가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대상 부동산의 중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 대상이 된다.

【문 8】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이는 당사자의 승계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③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문 9】 집행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②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 ③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乙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甲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10】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이의·취소·보전항고재판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즉시 집행력을 가지나 집행기간은 2주 이내로 제한된다.
- ③ 채권자의 보전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문11】 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권은 물론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 ② 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지급이 아니더라도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진 행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③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미치므로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문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소멸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절차와 결정으로서 비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13】 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 이의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되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준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 ②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건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 ③ 종료된 본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채권양도, 합병, 상속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제1심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보전소송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문14】보전처분의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송달 영수인은 제소명령·이의신청서 부분,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서 부분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가압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③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 ④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문15】공탁자(제3채무자) B는 채무자 A에게 지급할 대여금채무 1,500만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甲, 乙,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배당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계산서를 최고한 결과 甲과 乙은 일반채권자이고, 丙은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乙에게 배당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A의 채권자	이유	제3채무자 송달일	청구금액
甲	압류 및 추심명령	2020. 2. 3.	1,000만 원
乙	압류 및 전부명령	2020. 2. 7.	1,000만 원
丙	가압류(임금)	2020. 2. 9.	500만 원

- ① 0원
- ② 250만 원
- ③ 500만 원
- ④ 1,000만 원

【문16】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17】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사건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이 확정되더라도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③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의 제소명령상의 지위를 승계하고,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소장접수증명서를 첨부한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④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취소의 경우에는 효력유예 선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효력유예 선언을 할 수 없다.

【문18】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 진술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③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매각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 ④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문19】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 ② 매수인이 채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00분의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채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도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문2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 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적용이 없다.
- ②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 ④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문 1】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선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 ② 통상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할 수 있지만, 경정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실질이 말소등기에 해당하는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있어서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가 아닌 부등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로 행세하며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甲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등기기록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문 2】 등기절차에서 등기관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제3취득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리자가 될 수 없다.
- ②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해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등기절차상 등기관리자는 아니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기관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이다.
- ④ 甲→乙→丙의 순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먼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丙이지만 등기관리자는 乙이 된다.

【문 3】 甲으로부터 乙 명의로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고 이어서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이유는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 ② 丙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말소회복에 대한 丙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등기관은 말소회복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 ③ 등기관이 말소회복등기의 요건이 충족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할 때 丙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된다.
- ④ 丁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문 4】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을 가지고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위해서도 할 수 없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권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 ④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②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수 없다.
-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시 결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6】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제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철타존속기간”과 같이 불확정기간인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③ 구분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미 전세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사용의 제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 7】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와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 위임장과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도 신청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첨부서면이므로 환부 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등기원인증서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과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말한다.
-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는 등기 완료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8】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때에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한다.
- ②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주소증명정보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 ④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 9】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에 재감 중인 자라도 위임장에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무인과 교도관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 ③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관이 등기의무자를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근거 법률에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직무대행자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대표자 유고 시 다른 이사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공한다.

【문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전에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 ②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丙회사가 乙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는 甲회사로부터 丙회사 앞으로 바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乙회사가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다시 丙회사가 乙회사를 흡수합병한 다음 丙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丁회사를 설립하고 이어 丁회사가 다시 그 일부를 분할하여 戊회사를 설립한 경우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순차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丁회사를 거쳐 다시 戊회사에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戊회사는 甲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1】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판결금을 변제공탁한 후 위 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공탁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불능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한 공탁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형사피고인이 회수제한신고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회수되기 전이라면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 ④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권자 甲)이 성립한 후 乙이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乙은 전부채권자로서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2】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기록의 열람은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 ②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공탁액 1억 원)을 하는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 ③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후 발송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교부청구할 때까지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의 전자서명 외에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13】 변제공탁물의 출급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문14】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1천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에 대하여 丙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 1천만 원)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丁)를 순차적으로 각 송달 받고, 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 불확지 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공탁을 결합한 혼합공탁(1천만 원)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甲은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해야 하고, 공탁관은 乙과 丙에게 각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甲이 혼합공탁을 할 당시 채권양도(양수인 丁)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공탁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탁관은 공탁신청을 불수리해야 한다.
- ③ 丙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수인 丁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15】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조건부 공탁과 채무액 일부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②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16】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여 바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7】 甲은 乙에게 대여금 채무(100만 원)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과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 원)을 각 송달받고, 위 채무 100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乙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출금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공탁금 중 40만 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기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과 丁의 채권압류가 각 실효된 경우 乙은 각 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위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戊의 채권압류 ·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50만 원)이 공탁소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④ ㄱ, ㄹ

【문18】 甲은 乙(주소지 : 의정부시)에 대한 대여금 채무 5백만 원을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관할 공탁소 : 의정부지방법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乙의 위임을 받은 丙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특칙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금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탁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乙이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乙 명의이어야 한다.
 ④ 乙은 공탁금 출금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 제출이 면제된다.

【문19】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문20】 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④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16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2교시

민법, 민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2. 4. 16.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20. 4. 1. 乙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1. 3. 31.로 하여 대여해 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문항별로 각각 독립적임)

1. [추가된 사실관계] 만약 乙이 위 차용금의 이자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가 변제기인 2021. 3. 31.에 원금 중 1억 원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첫 번째 변제), 2021. 9. 30.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두 번째 변제), 두 번째 변제 후 2021. 9. 30. 현재 잔존한 乙의 채무는 총 얼마인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甲과 乙간의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는 없음)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위 대여일인 2020. 4. 1. 乙과 丙은, 乙이 甲에게 부담하는 대여금반환채무 전액을 丙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甲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이 2021. 4. 1. 丙에게 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丙이 “乙과 丙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 당시에 승낙하지 않았던 甲은 이제 와서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丙의 주장은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추가된 사실관계] 乙이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기가 지나도록 甲에게 대여금반환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甲은 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乙의 丁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하여, 丁에게 직접 자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乙이 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丁은 위 대여금을 乙에게 변제한 후, 甲에게 대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위와 같은 甲의 청구는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5점]

나. 위와 같은 丁의 주장은 타당한지 그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상가건물 A의 소유자인 甲은 A상가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9. 10. 1.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19. 10. 1. A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A상가에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하였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과 乙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은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약정하였다. 乙은 임대차계약 계속 중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A상가에 화장실 1칸을 증축하였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乙이 甲에게 증축 부분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고, 위 증축 부분이 부속물이 아니라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乙의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丙은 2021. 7. 31. 甲으로부터 A상가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A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21. 9. 30. A상가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는 것을 종료하였으나 A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 2021. 9. 30. 이후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가. 이 경우 乙은 甲과 丙 중 누구를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위 소송에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근거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乙이 A상가를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위 공제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20. 1. 1. 甲의 동의 없이 丙과 A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알게 된 甲은 2020. 2. 1. 丙을 상대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여 A상가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위 임차목적물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甲 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2015. 5. 1.자 매매’를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하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문항별로 각각 독립적임)

1.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위 X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甲의 대리인 A와 乙이 2015. 5. 1.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A에게 위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甲의 청구에 대하여 내려야 하는 판단(각하/기각/인용/일부 인용 중 선택)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위 ‘2015. 5. 1.자 매매’가 甲과 乙간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던 것이어서,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던 중 동시에 싸움이 일어나 서로 상해를 가하여 甲은 추간관탈출증이 발병하였고 乙은 치아 3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이 甲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X토지 매매대금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乙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다. 甲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아래 각 사안은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甲의 채권자인 丙은 甲이 乙에게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2. [추가된 사실관계] 甲의 채권자인 丙은 甲이 乙에게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甲이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3. [추가된 사실관계] 甲의 채권자 丙은 甲이 乙에게 가지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2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장부분을 송달받고 40일이 지난 후, 이미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그 후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법원의 위 무변론 판결 선고의 당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변제항변 외에 제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항소심은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①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인용, ② 항소기각 중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하시오(**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15점]

【문 3】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 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아래 각 사안은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 **[추가된 사실관계]** 乙은 丙에게 위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이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15점]
2.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제 소유권자가 아닌 甲은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이 판명되었다면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 및 이유를 논하시오. [15점]

2022년 4월 16일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2. 4. 16. 시행
법원사무관 일반승진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A회사와 화물차량에 대하여 차량위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화물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지입계약에 따라 차량의 소유명의는 A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한편, 乙은 화물차량을 밀수출하기로 하고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판매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지입차주인 甲을 알게 되었다. 甲은 점유 중인 위 화물차량을 지입회사인 A회사의 승낙 없이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문 2】

변호사인 甲은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였다. 甲은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0점]

【문 3】

甲은 乙의 아내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甲은 2019. 7. 30. 乙이 일시 부재중인 때 乙과 위 A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A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집에 A와의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 甲이 주거침입죄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5점]

【문 4】

甲은 사망한 乙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사망하였고, 甲 앞으로 위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기회로 법원에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니 乙은 甲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 및 선고기일 소환장 중 일부는 甲이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치 않는 방법으로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의 죄책 및 죄수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문 5】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마치 많은 회원들이 A주식회사가 구축·설치하여 위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내고 그에 따라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 거래시스템상 여러 개의 차명계정을 생성한 뒤 위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 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고, 이를 위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였다. 사전자기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된 甲은, ①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거래시스템상 차명계정에 원화 포인트 등을 입력한 것으로 위 거래시스템은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② 정보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전자기기록에 입력한 정보가 허위이더라도 이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기록등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甲이 사전자기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죄 죄책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甲의 위 주장 ①, ②를 참조하여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20점]

【문 6】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B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C은행의 대표이사 乙은 甲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A주식회사 명의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액면금 3억 원의 A주식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C은행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甲의 죄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5점]

형사소송법

【문 1】

항소심 공판절차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물음은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피고인 甲은 2020. 12. 24. 14:3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시 OO동 OO사거리 앞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좌회전 해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 乙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일 후 사망하였다.
- 제1심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은 과속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신호위반 사실은 부인하였고, 목격자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甲의 신호위반 사실을 증언하였다. 제1심 재판부는 목격자 A의 증언을 받아들여 피고인 甲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甲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 항소심에서 피고인 甲은 다른 목격자 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丙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1심이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증인 A의 증언에 대한 판단을 배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3. 위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4.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11.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甲의 신체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다.

1.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A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A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경찰이 이를 압수하여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甲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8. 12.경 지하철에서 피해자 乙, 丙을 상대로 저지른 같은 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동영상과 사진에 관한 증거능력과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2. **(위 기본사실에 추가하여)** 경찰은 2020. 12. 1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甲을 촬영한 피고인의 B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피혐의자는 2020. 12. 11. 피해자 甲의 신체를 촬영할 때 사용한 것이라며 임의 제출하므로 본건 압수물로 압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면서 본 건 발각 전 2020. 10.경부터 2020. 12. 10.까지 10회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丁 등 다수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도 인정하였고, 경찰은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10회의 범행에 관한 각 사진을 선별하여 출력한 다음 약 5분 간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한 다음, 출력된 사진에 파일명이 기재된 서면들을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하였고 피고인이 무인으로 간인하였다. 위 각 사진의 증거능력과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3】

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각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음).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은 피고인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기망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재판장은 증거조사 완료 전 직권으로 피고인을 신문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의 적법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문 4】

【사실관계】 甲의 제보로 시작된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서, 피고인은 법원에서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검사가 甲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증인신청을 하여, 검사에게 甲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甲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는 법원에 甲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甲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면서 소재탐지 및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았고, 甲이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甲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법원이 甲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고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방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등은 이 법을 적용할 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가명)으로, 간인(간인) 및 날인(날인)은 무인(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0]

별첨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2.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 ③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과 제3항에 따라 면담 신청을 한 자는 검사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이의신청은 그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허가하거나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 ① 제7조에 따라 조서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에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로 하여금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환된 증인의 신원확인은 검사가 제시하는 신원관리카드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선서서(선서서)에 가명으로 서명·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재판장 또는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2.10]